

2025년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「좋은일터」 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,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「좋은일터」 조성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13일
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

1. 사업 목적

-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및 직장문화 조성, 청년 일자리 보호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통한 지역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

2.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으로 지원제외 등 **결격사유**가 없으며 아래 자격요건①~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
 -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제조업(전업률 30% 이상)
 - ※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/ 분류번호 C10~C34
 - ※ 대전 관내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며 대전에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, 또는 대전에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
 - ②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C10~C34(제조업) 외 업종 기업
 - ※ 대전 관내 본사가 소재하며 【붙임1】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◀ 결격사유 ▶

- ▶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제외대상
- ▶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, 휴·폐업 중인 기업
- ▶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%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
- ▶ 임금체불 기업, 민원 야기, 환경오염,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▶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
- ▶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업
- ▶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▶ 지원제외 업종

○ (참여기준) 최근 3개년도 말 기준 평균 근로자 수 10인 이상으로
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/ 15개사 내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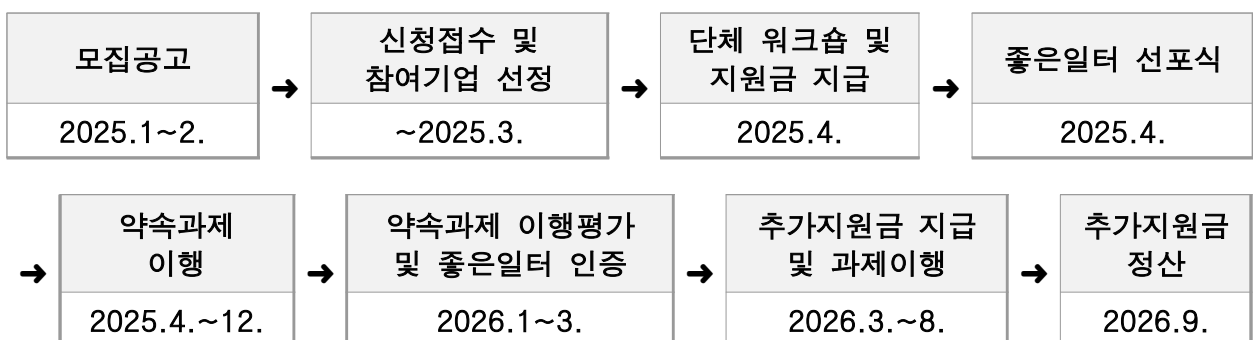
- (1그룹) 평균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
- (2그룹) 평균 근로자 30인 이상 ~ 50인 미만 기업
- (3그룹) 평균 근로자 10인 이상 ~ 30인 미만 기업

※ 그룹별 기업 수는 신청·선정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기업 선정
※ 인증 종료 기업 재참여 기회 제공(유지). 단, 신규 참여기업 우선 선정

○ (지원내용)

직접 지원	<p>• 선정기업 지원금</p> <p>- 기업 규모에 따른 그룹별 지원금 차등 지급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근로자 수</th> <th>지원규모</th> <th>1차 지원금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그룹</td> <td>50명 이상</td> <td>3개사(20% 내외)</td> <td>50,00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그룹</td> <td>30명~49명</td> <td>5개사(30% 내외)</td> <td>40,00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그룹</td> <td>10명~29명</td> <td>7개사(50% 내외)</td> <td>30,00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• 추가지원금</p> <p>- 과제이행평가 및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등급(S등급~C등급) 결정</p> <p>- 평가등급 S, A, B등급 이상 기업 추가지원금 지급</p> <p>- 추가지원금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</p> <p>- 자부담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사업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사용, 사업 완료 후 회계 정산 필수 (지원금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)</p>	구분	근로자 수	지원규모	1차 지원금	비고	1그룹	50명 이상	3개사(20% 내외)	50,000,000원		2그룹	30명~49명	5개사(30% 내외)	40,000,000원		3그룹	10명~29명	7개사(50% 내외)	30,000,000원	
	구분	근로자 수	지원규모	1차 지원금	비고																
1그룹	50명 이상	3개사(20% 내외)	50,000,000원																		
2그룹	30명~49명	5개사(30% 내외)	40,000,000원																		
3그룹	10명~29명	7개사(50% 내외)	30,000,000원																		
간접 지원	<p>• 좋은일터 인증기업 지정 / 인증기간: 3년</p> <p>- 약속이행평가 총합(과제이행평가+성과평가) 120점 이상 기업</p> <p>•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/ 기업 위상 제고 및 이미지 향상</p> <p>- 노동자가 근무하고 싶은 기업 육성·홍보로 우수인력 지역 채용 유도</p>																				

○ (지원절차)



○ (약속이행과제)

- 제시된 10대 핵심과제 중 필수과제 4건, 선택과제 자율 선택
- 10대 과제를 참고하여 기업별 자체 세부과제 설정(평가 시 점수 부여)

※선정 후 이행과제 변경 및 추가 가능(총 과제 수는 유지해야 함)

필수 과제	① 주52시간 근무제 준수	③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
	② 안전·보건관리 개선	④ 일·생활균형 환경 조성
선택 과제	⑤ 청년 일자리 창출	⑧ 노사상생관계 구축
	⑥ 원·하청 관계 개선	⑨ 인적자원관리 선진화
	⑦ 근무환경 개선	⑩ 문화여가활동 지원

3. 사업 신청(접수)

○ (신청기간) 2025. 1. 13.(월) ~ 2025. 2. 5.(수)

○ (접수방법) 방문 접수

○ (접 수 처)

- 위치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, 2층 201호
- 접수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

○ (신청서류)

- ①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【붙임2】
- ② 개인(기업)정보 이용·제공·조회 및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【붙임3】
- ③ 사업신청서 【붙임4】
- ④ 사업계획서 【신규참여기업 붙임5】 / 【기참여기업 붙임5-1】
※ [별첨] 사업계획서 예시 참고
-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
- ⑥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부
※ 2022.12.31.기준 / 2023.12.31.기준 / 2024.12.31.기준
- ⑦ 2년간 재무제표(2022, 2023년), 부가가치세신고서(2024년 1~4분기)
- ⑧ 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 ※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
- ⑨ 기타 증빙서류(가점사항 확인자료 등)

4. 참여기업 선정

○ (평가일시) 평가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

○ (평가방법) 정량적, 정성적 평가 및 가점 사항 평가 / 발표평가

종합평가점수 = 정량평가[서류평가(50점)] + 정성평가[사업계획서 평가(50점)] + 가점(10점)

- (정량평가)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적용 일반적 기업평가(50점)
⇒ 성장성(10점), 수익성(10점), 안정성(10점) 정착도 및 기여도(10점), 과제설정(10점)
- (정성평가)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(50점)
⇒ 목적 및 추진의지(15점), 사업수행부분(10점), 사업관리부분(15점), 기대효과(10점)
- (가점) 신청서 및 증빙자료 (10점)

◀ 우대가점 기준 ▶

- (각 2점) 대전시 유망중소기업,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, 벤처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경영혁신형(MAIN-BIZ)기업, D-유니콘기업,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
 - *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
 - * 단, 매출의 탑 및 유망중소기업 수상기업은 22, 23, 24년 수상기업에 한해 적용
- (3점) 첨단기술 기업('첨단기술기업 지정서'를 보유한 특구 내 기업 또는 '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'를 보유한 기업)

○ (발표자) 기업 대표 (또는 총괄 책임자) ※ 발표자료 별도 준비

5. 과제이행평가

○ (평가일시) 2026. 2월 중 / ※ 평가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

○ (평가방법) 정량적, 정성적 평가 및 감점 사항 평가 / 발표평가

※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은 약속사항 추진 실태 및 성과분석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종합평가점수 = 과제이행평가(정량평가(70점), 정성평가(30점), 감점) + 성과평가(100점)

- (정량평가) 보고서 및 증빙서류, 회계감사 참고(70점)
⇒ 과제 이행정도(20점), 과제이행률(10점), 주52시간근무 준수(10점), 교육이수(10점), 안전보건 관리개선(5점), 돌봄지원 근무제 도입(5점), 지원금 집행(10점)

- (정성평가) 평가위원회의 약속사항 이행보고서 평가(30점)
 - ↳ 노력도(10점), 파급효과(10점), 지속의지(10점)
- (감점) 근로시간 증가(-3점), 고용인원 10% 이상 감소(-3점), 안전보건업무 전문인력 미배치(-2점), 자부담 투입비율 5% 미만(-2점)
- (성과평가) 기업별 이행보고서(정산자료) 및 만족도 조사 결과(100점)
 - ↳ 비정규직 보호(10), 근로시간 단축(10점), 고용인원 증원(10점), 자체자금 투입정도(20점), 과제발굴(20점), 임직원 만족도(20점), 추가인증(10점)
- (발 표 자) 기업 대표 (또는 총괄 책임자) ※ 발표자료 별도 준비
- (평가결과) 과제이행평가 70점 이상 시 사업 완료

6. 좋은일터 인증 및 추가지원금 지급

- (평가방법) 과제이행 평가에 성과평가를 추가한 종합평가
 - (과제이행평가) 사업 수행의 적절성 평가
 - (성과평가) 사업 수행 완료에 따른 추가 성과평가
- (좋은일터 인증 및 추가지원금 지급 결정)
 - 모든 참여기업 좋은일터 인증(S,A,B,C 등급)
 - ※ 단, 평가 총합(과제이행평가 + 성과평가) 120점 이상 득해야 함
 - 추가지원금

평가등급	선정기업 수	기업당 추가지원금
S등급	3개사	30,000,000원
A등급	3개사	20,000,000원
B등급	4개사	10,000,000원
C등급	5개사	-

※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등급별 지원 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

- (추가지원금 집행) 과제이행평가 시 사전 계획한 향후 추진과제 이행
 - (집행기간) 2026. 3. ~ 8. / 해당 기간 사업비 집행

7. 유의사항

○ (지도감독)

- 약속사항 이행관리 등을 위해 전문가(자문단)가 위촉 운영되며, 참여 기업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수행 및 약속사항을 이행해야 함
- 진흥원 및 전문가(자문단)가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및 지도,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○ (지원금 결정)

- 선정기업의 지원금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함
- 최종 지원금은 기업의 고용원 수 및 평가등급에 따라 다름
-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은 그룹별 지원금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지원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작성함

○ (지원금환수)

- 약속사항 필수과제 불이행, 과제이행평가 기준점수(70점) 미달, 중도 포기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
- 지원금 부정(부당) 사용 시 해당 지원금 환수
- 협약기간 내 임금체불, 민원야기, 환경오염, 불법공장,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
- 지원금 환수 시 향후 5년간 좋은일터 재참여 불가

○ (인증취소)

- 인증 기간 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, 인증서 회수 및 인증 취소되며 향후 좋은 일터 재참여 불가

○ (기타)

-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, 지원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의신청 및 증빙자료를 신청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수행부서에 신청

8. 문의처

○ 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 기업혁신성장팀

☎ 042-380-3023

참고1

약속이행과제

구분	과제목록	주요 내용
필수과제	① 주52시간 근무제 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(노동시장 유연화 반영) - 사업기간 전체 1인당 평균근로시간 • 근로시간 단축(약속사항 이행평가 시 가감점 부여) - 24년 1인당 평균근로시간 대비 단축여부 점검
	② 안전·보건관리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업장 안전·보건 관리체계구축(제도화) 및 안전시설개선 • 안전·보건 관리인력 배치 및 처우개선 •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(예) 안전환경 및 보건시설 개선, 안전 및 보건업무 전담조직 구성·운영, 전문 또는 담당인력 배치(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산업보건의 등), 안전·보건 확보 기준·절차 마련, 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제도화, 기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
	③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,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 개인정보 보호교육, 퇴직연금교육,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- 대표자 참석 및 임직원 90% 이수 기준
	④ 일·생활균형 환경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장내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환경조성 (예) 유연근무·스마트워크제(시차출근, 재택, 원격근무) 도입,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 출산지원제도(출산 전·후 휴가 확대, 출산장려지원, 수유시간 및 시설지원 등) 자녀양육지원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, 직장보육시설, 자녀 보육비 및 학자금 지원, 다자녀 가정지원 등) 건강관리 지원(건강검진 및 증진비 지원, 스트레스 상담지원, 금연 캠페인 등) 가족지원제도(가족돌봄 휴직제도, 가족 건강관리 지원 등) 가족친화 문화조성(다양한 휴가제도, 가족 초청행사, 가정의 날 등) 등
선택과제	⑤ 청년 일자리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년의 고용안정 도모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(예) 정규직전환, 고용안정 보장, 근로조건 개선, 생활임금 보장 등 ※ 대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(만18세~39세)
	⑥ 원·하청 관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·하청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 (예) 협의체 운영, 이익공유제 도입, 대금결제 기일 단축 등
	⑦ 근무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자 업무효율증진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
	⑧ 노사상생관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 및 환경 개선 (예) 노사협력 선언, 생산성 향상운동, 비용절감 운동, 4차 산업혁명 대비 노사 간 협의 전개, 각종 노사공동협의체 구성·운영, 기타 노사화합 교육 및 행사 등
	⑨ 인적자원관리 선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및 각종 인사관리 제도 선진화 (예) 직무능력 향상 교육, 급여체계 합리화,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
	⑩ 문화여가활동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장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(예) 동호회 활동 지원, 공연·전시 관람, 지역 문화예술인 초청 공연·전시, 공연장 법인 회원가입 등 직원 할인서비스 제공 등

참고2

사업비 사용가능 항목

구분	과제목록	사업비 사용가능 항목 및 유의사항
필수 과제	① 주52시간 근무제 준수	<p>[사용가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52시간 근무제 정립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<p>[사용불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건비 및 각종 수당(가족, 휴직, 위험, 초과·특근, 관리 등), 성과급, 명절 휴가비, 정액 급식비 등
	② 안전·보건관리 개선	<p>[사용가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환경 및 보건시설 조성 및 개선비 안전 및 보건장비 구입비 안전 및 보건업무 전문인력 기술수당(규정 개정 시) 및 전문기관 위탁비 (약관 동의서, 계약서 증빙) ※ 전문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격(산업안전 관련 학위 및 자격 취득, 교육이수 등)을 갖춘 자 / 자격 미충족자는 전문인력으로 인정 불가(지원금 사용 불가) 안전 및 보건 관련 워크숍(교육) 개최비 안전 및 보건업무 담당자 직무 교육비 ※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 시행 교육만 인정 <p>[유의사항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수당 지급 시 규정 및 지침개정(상향, 신설) 필수 <p>[사용불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인력 기술수당 외 인건비 사업장이 필수로 갖추어야 할 근무환경을 위한 유지·보수비 (예) 누수로 인한 공사, 시설(승강기 등) 고장으로 인한 수리, 필터(냉난방기, 유수분리기 등) 교체 및 청소 등
	③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	<p>[유의사항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비 집행 불가(기업 자부담 진행) 자체 교육시 교육 계획, 결과보고(참석자 명단) 필수 대표자 필수 및 임직원 90% 이상 이수
	④ 일·생활균형 환경 조성	<p>[사용가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장보육시설(수유실, 어린이집 등) 조성 및 개선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(전자파 방지 앞치마, 태아보호 쿠션, 태교 관련 서적 등),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등 근로자 및 가족 건강관리비(내부 규정 근거 필수) 가족 초청행사 등 <p>[유의사항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도 정비 과제는 규정 및 지침 개정(상향, 신설) 필수 <p>[사용불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에 유지 및 지원되고 있는 사항
선택 과제	⑤ 청년 일자리 창출	<p>[사용가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기타 청년 근로자의 처우개선(생활임금보장, 수당 상향 등) <p>[유의사항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규직 전환 시 전후 근로계약서 제출 수습 기간 종료는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음 생활임금 보장 및 수당 상향 등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상승 시 규정 및 지침 개정(상향, 신설) 필수 <p>[사용불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규정 외 비용

구분	과제목록	사업비 사용가능 항목 및 유의사항
선택 과제	⑥원·하청 관계 개선	[사용가능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및 체육대회 등 행사비 협업체 운영비 등
	⑦근무환경 개선	[사용가능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무실, 휴게실, 화장실 등 환경 개선(조성 및 개선) 근로자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 등
		[유의사항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의 경우 교체 및 구입 사유, 사용자를 명확히 제시, 전후 사진 필수
		[사용불가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표자 및 임원을 위한 비용 관외(대전 외) 소재 공장, 지점 등 근무환경 개선
	⑧노사상생관계 구축	[사용가능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사화합 관련 교육비, 워크숍 및 체육대회 등 행사비 등
⑨인적자원관리 선진화	[사용가능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사·노무관리 제도 정비(제정 및 개정) 비용 직무능력 향상 교육비 등 	
⑩문화여가활동 지원	[사용가능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기업 단체활동) 공연, 전시, 영화관람, 동호회 운영 및 단체복 등 (근로자 개별활동) 자기계발(내부 규정 근거 필수) 	
	[유의사항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호회 지원기업은 동호회 운영 현황, 운영규정 등 제시 	
	[사용불가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연, 전시, 영화관람 시 개별지원 불가 단순 동아리 식비, 교통비,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비용 내부 규정에 벗어난 자기계발 비용 	
기타 필수 사용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계감사비 : 사업비 정산 내역 회계법인 감사를 위한 비용 	
공 통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 조성 및 개선 시 전후 사진 필수 공사(용역)계약 시 계약서 필수 단체행사(워크숍, 간담회 등) 시 계획서, 결과보고 필수(사진, 참석자 등) 물품 구입 시 견적서, 납품 사진 필수 제도 정비 과제는 규정 및 지침 개정(상향, 신설) 필수 과제이행에 지원금을 집행하였으나 증빙자료 미비 시 인정 불가 	
사 용 불 가 항 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제②,⑤ 외 수당 및 인건비 지급 불가 단순 식비, 교통비, 출장비, 단순 사무용품(A4, 볼펜 등) 집행 불가 * 사무실 내 책상, 노트북, PC 등 당연히 구비해야 하는 물품에 지원금 사용 불가 단, 사무실 외 장소(휴게실, 회의실 등)에 편의 및 개선 목적을 위한 공용 책상, 공용 노트북, PC 등 구비에는 지원금 사용 가능 국내·외 연수 및 여행경비 불가 포상, 경품, 선물세트, 각종 상품권, 현금화 가능 물품 등 불가 단체행사 중 소요되는 식비 및 교통비(단체 버스)는 가능 * 단, 식비 집행 시 1인당 1식 3만원(부가세 미포함) 제한 유의 * 버스 대절 혹은 차량 렌트에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나, 직원 개인 차량 이용 후 유류비 지원에 지원금 사용 불가 	
주 의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금을 기한 내에 미집행 또는 부정 사용 시 약속사항 이행평가 점수에 반영, 환수 조치 (감점 최대 -10점) 	